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7

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이훈기·황 희·조인철

박해철 • 민형배 • 박선원

허성무 · 염태영 · 문정복

김정호 · 정을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,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
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,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,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, 도로건설·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 2항제10호"를 "제2항제10호 및 제11호"로 한다.

11. 「도시철도법」 제5조에 따라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, 「도로법」 제6조에 따라 수립된 도로건설·관리계획 또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.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2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	,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생	제38조(예비타당성조사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②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	
대상에서 제외한다.	,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1. 「도시철도법」 제5조에 따
	라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
	획, 「도로법」 제6조에 따라
	<u>수립된 도로건설·관리계획</u>
	또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
	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
	및 제7조의2에 따라 확정된
	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
	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
	확정된 사업. 이 경우 예비타
	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
	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
	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
	<u>야 한다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
<u>0호</u>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
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
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
의 중장기 재정소요, 재원조달
방안,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
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
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
하고,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
영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(5) <u>제2항제1</u>
0호 및 제11호
⑥ (현행과 같음)